

일-가정양립정책을 바라보는 생활과학적 관점에 대한 一考

조 영 희(서원대 생활복지학과)

I. 문제제기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이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 수치는 향후 우리사회에 닥쳐올 노동력 수급 및 가족 부양의 문제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그러면 왜 우리 사회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실 저출산 현상은 예견된 결과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돌봄노동을 대체해주는 대안은 턱없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물론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이전에 이미 취업여성의 일과 가사노동(가족돌봄 까지 포함)의 심각한 이중부담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특히 생활과학에서)에서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최근까지만 해도 오로지 개별가족에게 맡겨졌을 뿐 사회적인 이슈로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물론 취업여성의 이중부담 문제를 사회 이슈로 올려놓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에 힘입어(?) 비로소 사회적 혹은 정책적 관심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그 아동을 돌리싸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이것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노동력 활용의 문제이면서 여성의 문제이고 아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문제이다. 그 의미는 경제적 개념의 문제를 넘어선 훨씬 더 포괄적인 문제 즉 사회적인 가치관과 권리의 문제 등과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 노동력 확보,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과 아동의 인권과 함께 가족의 행복권과도 관련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처방 또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한 우선적인 처방은 서구 복지국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일-가정 양립정책들을 우리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실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증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부모와 아동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한 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취업여성에게 아동양육과 일의 이중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아동 역시 긴 시간동안 부모와 격리되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최근 일-가정양립정책은 노동시간정책에 보다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다. 이 노정에서 일-가정양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즉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학문적 목적으로 하는 생활과학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사회의 여성, 아동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다 행복할 있는 실효성 있는 일-가정양립정책 생산에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시간과 노동시간의 균형점 모색에 관심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과학 분야(가정관리학 및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일-가정의 ‘양립’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둘째, 생활과학에서 채택되고 있는 관점에서 일-가정양립정책에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본 연구문제를 위해 생활과학에서의 ‘양립’에 대한 관점파악은 그동안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가정관리학회 및 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의 발표 자료 및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검토하고, 우리의 관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여성학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논의해 온 관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의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일-가정양립정책을 노동시간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일-가정양립정책 발달의 사회 경제적 배경

1. 일-가정양립정책의 개념

사회 각 주체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이할 수 있다. 즉 정부(국가)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인 관심이 저출산의 문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이다. 즉 일-가정양립정책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책적 관심의 출발은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최저출산율이 보고되면서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과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취업부모 및 아동 양육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화 확대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 부분을 여성노동력으로 채우는 것이 우선 관심일 수밖에 없고, 특히 기업의 경영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탄력적인 인력 수급의 문제에서 여성노동력은 유용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사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일-가정양립정책에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족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은 곧 소득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취업은 불가피한 전략이다. 그 외에도 여성 개인적으로는 취업은 자신의 능력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OECD의 일가족양립정책(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의 정의에 따르면, 일가족양립정책은 개인과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고 사회에 충분히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들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있는 조화를 촉진하고, 성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모든 ‘가족친화적 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여성의 취업지속과 육아의 문제가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홍승아, 2008). 결국 일가족양립정책은 노동권, 평등권, 부모권 달성이 주요 관건이며, 노동지속과 출산 그리고 평등한 자녀양육이 일가족양립정책의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개념 정의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정책의 대상자는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이다.’ 즉 아동은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이기 보다는 취업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에서 남녀근로자의

양육대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아동의 보호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지만 정책의 대상을 남녀근로자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남녀근로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일-가정양립정책 발달의 배경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빠른 속도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 공적영역에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모든 조직이 구조화 되었고, 사적인 영역인 가족은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형태로 가족과 사회 조직이 재편되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대 30%대, 1980년대 40%대 초반, 1990년대 40%대 후반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이후 50%대로 진입하였고, 2006년 51.3%, 2007년 50.1%로 이제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25세~5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0%를 넘어서고 있다(통계청, 2007 경제활동인구연보).

또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여전히 M자 커브를 그리고는 있지만 과거 전형적인 M자 커브와는 달리 그 커브의 폭이 완만해졌고 동시에 하극점이 상당히 위로 솟아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하극점의 위치가 25-29세에서 30-34세 위치로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2인부양자모델의 가계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현상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홍승아 외b. 2008). 여성들은 일 혹은 가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여성들은 출산연기, 소자녀 출산, 출산 포기 등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출산율의 감소는 쉽게 예측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혼과 가족(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조사 결과에서, 인생에서 결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남성 29.4%, 여성 12.8%) 나타났고, 결혼을 연기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안정한 문제와 일가족양립의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성별로 그 이유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에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이 보다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여성들에게는 취업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보였다. 1970년까지만 해도 합계출산율(TFR)은 4.53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 1.59, 2000년 1.47, 2005년 1.08, 2007년 1.26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서둘러 일-가정양립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서구 복지국가들의 일-가정양립정책 발달 배경과도 유사하다. 스웨덴의 경우 가족정책에 대한 담론은 1930년대 인구위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때 출산율 억제하는 경제적 조건이 인구위기를 불러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1970년대 일가족양립정책이라는 획기적 정책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경제영역의 확대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고, 동시에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부양자모델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홍승아 외b, 2008). 즉 여성경제활동, 저출산, 빈곤문제 등은 일-가정양립정책 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일-가정양립정책 현황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주는 크게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현금 및 조세지원정책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김태홍 외,2009; 홍승아 외a ,2009). 본고에서는 연구의 관심이 보육시간과 노동시간의 균형점, 특히 특정기간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두 시간’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보육정책과 노동시간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육정책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일하는 부모에게 양육부담의 완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책지표가 되며, 보육시설 운영시간도 정책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육정책은 크게 정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 주로 속한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별가족의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비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보육정책의 확대로 전체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률은 29.8%이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44%에 이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등록률, 2004년 기준)은, 0~2세 영아의 경우 19.5%, 3~5세 아동의 경우 60.95%로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이용률 수준은 소위 서구 복지국가라고 하는 덴마크(61.7%/89.7%), 스웨덴(39.5%/86.6%), 프랑스(28%/100%), 핀란드(22.4%/46.1%)와 비교할 때 낮다. 한편 독일은 9%/80.3%, 일본은 15.2%/86.4%로 나타났다. 위 국가 중 핀란드는 법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편인데, 이것은 관대한 부모휴가와 가정양육수당 지급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리의 낮은 이용률의 원인은 핀란드와는 달리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사회적 관계망 활용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 등이 관련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보육시설 서비스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해주는 돌봄에 미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아직 어린 영아를 보육시설에 믿고 맡기기가 최대한 보류되고 있으며 오히려 친인척 등 가족지원체계를 활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 이 수치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제도,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홍승아 외b, 2008).

한편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부모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여서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부모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느냐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일-가정양립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2006년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함께 종래의 반일반, 종일반 개념은 없어지고 모든 보육시설의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인 12시간이 운영되며, 이 시간은 곧 일하는 부모의 퇴근 시간 개념이다. 이 시간 양은 <표 1>의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10시간 이상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전일제(full-time child care) 방식이 운영되어 왔다(홍승아 외b, 2008).

물론 모든 아동들이 이 시간 내내 보육시설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이 시간의 범위 내에서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귀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기준 보육시간을 초과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는 아동을 위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정하고, 이런 시설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보통 저녁 9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국가별 보육시설 운영시간

국가	3세 미만 아동	3~학령 전 아동
오스트리아	7	6
벨기에	9	7
덴마크	10.5	10.5
핀란드	10	10
프랑스	10	8
독일	10	6
그리스	9	4
아일랜드	9	4
이탈리아	10	8
룩셈부르크	9	5
네덜란드	10	7
포르투갈	7	5
스페인	5	5
스웨덴	11	11
영국	8	5
한국	12	12

자료: De Henau et al(2007), Pronzato(2007) 홍승아 외b(2008) p.54 재인용, 한국 사례 추가

아동에게 12시간의 시설보호는 어떤 의미인가? 일하는 부모에게는 자신이 퇴근 할 때까지 아동이 보호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아동에게는 이 긴 시간의 보육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러나 일-가정양립정책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아동이 시설에 격리되어 견딜 수 있는 적정시간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서 아동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보육교사의 말을 빌려보면, 실제 보육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이렇다. 기준보육시간 7:30~19:30으로 규정되면서 모든 보육시설은 이 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육현장에서 아동이 보육시설을 떠나는 시간은 부모 및 가족들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부모가 전일제 맞벌이라 하더라도 할머니나 그 외 가족들의 지원이 있는 아동들은 대개 14:30~16:00면 귀가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못한 경우 부모들이 퇴근하면서 아동들을 데려가는 형태이다. 이때 일찍 귀가하는 아동들이 귀가하기 시작하고부터는 남게 되는 아동들은 ‘선생님 우리 엄마 언제 와요?’를 반복한다고 한다. 또한 출입문만 열리면 모든 아이들이 문 쪽을 향해 눈을 돌리며 혹시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왔나 하고 관심을 그쪽으로 집중한다고 한다. 혹 어떤 아이들은 엄마에게 오늘 어린이집에 일찍 와서 시설 내의 다른 아이들이 들리도록 ‘OO엄마가 왔으니 OO어린이는 나오세요’ 라는 얘기를 하도록 엄마 출근길에 부탁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2. 노동시간정책

OECD 국가 평균 연노동시간이 1,700시간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400시간 정도의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바뀌었음에도 실제 노동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남녀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표 2> 참조).

부모의 노동시간과 아동의 보육시간과의 협응이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관건이다. 초기 일-가정양립 정책은 부모의 노동시간에 아동 보육시간을 맞추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것보다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부모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고, 노동시간정책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정책은 가장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정책전략이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근로시간단축제도, 단시간근로형태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출산육아기 부모, 특히 근로자(여성)들의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2008년 6월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생후 3년 미만인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가 영아가 만 3세가 되기 전 1년 이내에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일제 육아휴직제가 근로소득 감소 및 경력단절, 사용자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작 초기부터 중요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즉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이 노동자가 원한다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노동자 청구권’, ‘노동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과 축소된 근무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업무로의 전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자신이 원래 일하던 부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고(김정아, 2008), 실제 업무부담은 그대로인 채 급여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는(황수경, 2008) 부정적인 예측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시간근로제가 도입되었다. 단시간근로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를 의미한다. 즉 통상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을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그러나 2007년 실제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12.5%로, OECD 국가 평균 25.3%(네덜란드 60.0%, 영국 38.8%, 프랑스 23.1% 스웨덴 1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자발적 단시간근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우수모델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단시간근로형태 신규도

입에 필요한 사업주 컨설팅 지원도 시범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이진숙 외, 2010 p.186-187).

결국 전일제 시간(풀타임)에서 단시간근로(파트타임)로 근로시간을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는 어린 아동들이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정책은 기존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정책은 노동시간을 가족시간으로 이전시켜 가족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나 아동양육의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속되는 한 결국 노동시장과 가족 내 성별분업의 변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불리한 위치에 남겨진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여성 임금노동자 중 2/3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단시간 근로확대는 여성 일자리를 더욱 주변화 시키고, 불안정한 구조로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외국 사례에서는 단시간근로제에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동시에 제도화 한 경우도 있다.

<표 2> 국가별 성별 노동시간(25~54세, 2007)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한국	OECD
남성	1~19	1.9	1.9	3.2	1.6	1.8	2.5	1.2	1.4
	20~29	3.1	2.5	2.4	2.3	2.9	3.3	2.6	2.3
	30~34	3.8	2.3	2.4	2.4	3.6	7.1	4.2	2.5
	35~39	17.2	22.4	25.0	49.2	17.8	30.7	4.6	4.0
	40+	74.0	70.9	67.0	44.4	74.0	56.4	86.8	89.3
여성	1~19	3.7	17.0	21.1	7.7	7.5	25.4	7.4	8.8
	20~29	10.2	18.4	18.9	14.1	11.5	30.5	22.2	5.6
	30~34	19.9	9.0	9.6	10.2	9.6	16.7	10.9	4.6
	35~39	20.0	25.5	19.6	45.7	31.7	15.1	9.7	6.8
	40+	46.2	30.1	30.9	22.3	39.6	12.3	49.2	78.3

자료 : OECD. Stat 흥승아 외b(2008) 재인용 p.324

노동시간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보면 <표 3>과 같다.

2000년 말 노사 양측을 포함 노동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급연차휴가를 늘리고, 노동시간도 개정하여 매 24시간마다 11시간의 휴식기간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와 함께 일가족양립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였고, 영국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고용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일가족 양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한 2000년 파트타임근로지침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육아휴직제도를 부모시간제도로 개정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고, 부모시간 기간 동안 파트타임 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 아버지들의 부모시간사용을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 중 가정 출산율이 높은 국가인데, 1998년 오브리 I 법에 의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이로 인해 창출된 고용은 총고용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주요전략은 노동시간정책이다.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파트타임에 대한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을 안정화시켰으며, 근로자의 근무시간 증감에 대한 요구권리를 명문화하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하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개발하면서 최근 ‘남성의 직장생활’개혁과 ‘재택보육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궁극적으로 ‘일-가정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의 새로운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김태홍 외, 2009).

<표 3> 외국의 노동시간정책

국가	정책유형별 특성	
스웨덴	정책특성 및 내용	·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8세까지 노동시간을 25% 단축 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	· 근로시간단축법(2002)
영국	정책특성 및 내용	· 유연한 노동을 요청할 근로자의 권리와 이를 고려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고용주들의 의무를 규정한 법
	관련법	· 파트타임근로지침(Part-time Working Directive, 2000) · 탄력근무규제(Flexible Working Regulation, 2002) · 탄력근무요청권에관한법(The Rights of Paren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 2003) ·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ies, 2006)
독일	정책특성 및 내용	· 15인 이상 사업체 근무 근로자들은 시간제노동 요구할 권리 부여, 단 다시 전일제 노동으로 복귀 권리는 부여되지 않음 · 부모시간 동안 주당 30시간까지 임금노동 가능하며 부모시간 내에서 시간제취업 요구가능
프랑스	정책특성 및 내용	· 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 자녀들과 있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 감소 및 최소 연간 유급 휴가 규정
네덜란드	정책특성 및 내용	· 풀타임과 파트타임 노동자 동등하게 대우 ·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고용주들은 중요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한 이 요구를 수용 하여야 함 · 노동자들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시 풀타임으로 이동이 가능함
	관련법	·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Equal Treatment of full- and part-timers, 1996) · 근로시간조정법(Working Time Adjustment Act, 2000)
일본	정책특성 및 내용	· 시간외 노동 제한: 육아·개호 등 노동자 1개월24시간, 1년 150시간 시간외 노동 금지 · 심야업 제한: 육아·개호 등 노동자 오후 10시~오전 5시 노동 금지 · 근무시간단축: 단시간 근무, 플렉스 타임, 시업·종업시간 앞당기거나 늦춤 · 파트타임 노동: 고용 시 노동조건 문서화, 직무·인재활용·구조계 약기간에 따른 대우, 정규사원 전환제도, 불평 제의에 대한 대응
	관련법	· 육아·개호휴업법(2005) · 파트타임노동법(2008)

자료 : 김태홍 외(2009) 선진국의 일가족 양립 현황 재구성

IV. 누구를 위한 양립인가? : ‘양립’을 보는 관점들

일-가정양립정책의 목적은 남녀근로자 가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들이다. 그렇다면 실제 그 정책은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 근로자 가족들의 어려움은 많은 부분 해소되었는가? 정책의 효과는 가족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는가?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을 양립이라고 보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성학계(여성주의적 관점), 사회복지, 생활과학계 입장에서 일-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여성학계(여성주의적 관점)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정책은 우리사회의 ‘성평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안겨 주었다. 해방이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던 정부의 여성관련 사업들이 1990년대 이후 여성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 즉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 등을 비롯해 많은 법률들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또한 정책수립 과정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젠더 계획(gender planning)의 개념을 도입해 산업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과 젠더를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을 큰 틀에서 여성정책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만큼 일-가정양립정책에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일-가정양립정책은 그 수립단계에서부터 여성주의적 시각이 바탕이 되었고, 정책의 중심에 여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지·지원하는 정책이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와 동반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일종의 장애요인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동양육의 문제이다. 아동양육은 여성 사회참여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간주되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일-가정양립정책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각에서 일-가정양립의 문제를 본다면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동은 엄마와 격리되어 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 관리되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동은 정책의 주체가 아니다.

아동은 아직 발달 중에 있는 존재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 개별성의 욕구를 지닌 존재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과 사회가 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의 사회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일-가정양립은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 보장과 함께 아동(인)권을 부수적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2. 사회복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 특히 빈곤층의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교육 및 상담,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정책에 관심을 두어 왔다. 특히 빈곤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어린 아동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이 사회복지에서는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시설(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보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했고, 이러한 노력은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의 지속성 보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여성가장이나 한부모가족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노인의 빈곤문제와도 직결되는 여성복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여성의 경제활동 문제는 최근 관심의 영역 속에 포함은 시키고 있으나 여성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일-가정양립을 위한 방향이다. 198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 방향이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면서 모든 아동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나 실제 한정된 대상에 대한 복지권 보장 수준에서

일-가정양립에 대응하고 있다.

3. 생활과학(가정관리학 및 가족자원경영학)

생활과학(가정관리학 및 가족자원경영학)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어 온 학문분야이다. 가족의 삶의 질은 가족환경 뿐만 아니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의 맥락에서 접근된다.

최근의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활과학 분야에서의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연구들은,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 및 외국의 정책 소개(정영금c, 2009),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송혜림·서지원, 2008),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실태 등에 대한 연구(윤소영, 2008; 최성일·유계숙, 2006),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우리의 관점 연구, 이를테면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평가(정영금b, 2008), 통합적 가정정책(송혜림, 2008) 등이 있고, 그 외 (양립의 균형점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가정의 지표개발 등의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기 보다는 조응하는 것을 기조로, 그 세부적인 관점은 여성주의(성인지적 관점) 관점과 함께 가족의 삶의 질 맥락에서 최근 몇몇 논문에서 정책에 가족인지적 관점의 도입을 언급하고 있다(조희금 외, 2010). 여성주의 관점과 가족인지적 관점은 어느 일면에서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과학 분야에서는 이 두 관점이 병행 혹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일-가정의 양립에서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과 함께 아동(인)권, 부모권 등이 포함된 가족의 행복권 모두에 가치를 두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관점이 여성주의 시각과 구별되는 것은 정책의 균형점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병행된 관점에서 (정책과는 별도로) 일과 가족의 양립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보육시간과 가족의 노동시간의 균형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V. 대안

알바 미르달은 모성권과 노동권의 문제는 대립의 문제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대립과 선택의 딜레마는 노동권과 모성권을 성의 문제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모성권과 노동권의 조화가, 즉 일과 가족 양립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면 두 권리의 대립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 두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대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적절한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생활과학의 혼재된 관점에서 오히려 여성의 노동권(평등권), 아동(인)권 그리고 부모권을 포함한 가족의 행복권 확보를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정근로시간 개념으로서 1일 노동시간의 감축이 필요하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있다. 즉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최근의 노동시간정책 방향은 이 원칙에 부합되나, 실효성 측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아동은 말이 없다. 어려서부터 시설 보호에 길들여진 아동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것이다.

한편 2인부양자모델의 가족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여성, 남성 모두 노동시간이 너무 많다(<표 2> 참조). 산업화 초기 표준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는 고용주 입장에서 지속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주들의 장기적인 전략에서 필요한 것이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근로기준시간이 1일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이다. 즉 이 기준은 산업화 초기 가족의 형태에 적합할 뿐, 여성의 경제활동(특히 풀타임)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이라는 현실에는 적합한 기준시간이 될 수 없다고 본다. EU 27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급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하여 꼭 해야 할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 라는 조사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45%)가 한 달에 대여섯 번 정도는 일에 의한 피로로 인하여 집안일을 할 수 없다고 응답 하였으며, 약 1/4의 근로자가 일주일에 대여섯 번 집안일을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홍승아 외, 2008).

가족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근 노동시간정책들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의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결코 선택하기 쉽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감축함으로써 주말 가족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아동, 여성, 남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정노동시간으로서의 1일 노동시간의 감축이다. 그리고 그 시간의 양은 전문적인 분석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활과학 분야에서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법정근로시간을 감축한다면 여기에는 남녀 선택의 문제가 따르지 않으며 동시에 고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남성에게 가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미르달이 제안한 궁극적으로 근로자가족의 삶의 질을 고려한 ‘보편적 생계부양자가구’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프랑스의 노동시간의 감축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약 60%가 노동시간의 변화로 그들 삶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조정에는 근로자 자체의 소득보전문제, 사회조직체계의 전반적인 조정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따른다.

2. 남성에게 가족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여성들의 노동력의 시장화 전략이었다면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에게 가족화 전략이 필요하다. 가족화 전략은 가족 내 성평등의 문제이며 동시에 ‘보편적 생계부양자가구’를 지향하는 정책 전략이다. 가족은 체계이다. 가족 내 한 구성원에게 변화가 있으면 다른 구성원은 그 변화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체계의 속성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가족 시스템은 특정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작동하고 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김혜영 외, 2009)에서 남성들의 일-가족 양립갈등에 아내의 취업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의 부성역할 수행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도 아내의 취업 변인은 유의미

하지 않게 나왔다. 부인의 취업 여부에 따른 남성의 태도나 경험의 차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성들이 취업을 하였어도 현실적으로 남성들의 가사노동 및 육아참여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주생계부양자인 남성들의 장시간 근로는 불변의 상수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남성의 ‘가족화’ 전략을 위해서도 법정노동시간의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아동이 일-가정양립정책의 희생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가정양립의 균형점 모색에서 근거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다.

4. 정책개발 기구의 구성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겠다.

현 가족정책포럼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구(이를테면 가족정책학회)는 우리 생활과학 분야의 학문적 관심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의 노동권(평등권), 아동(인)권, 부모권, 가족행복권 등에 입각한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보다 정교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양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환 외(2005).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함께 읽는 책 .
- 공계순 외(2004). 아동복지론. 학지사.
- 김남주 · 권태희(2009). 기혼여성의 직장 · 가정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 여성연구 1호, 43-70.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아(2008). 근로시간 단축권과 일가정양립법의 취지. 이슈브리프. 57-62.
- 김태홍 외(2009).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정양립 정책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연구 보고서
- 김혜영 외(2008).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보 고서.
- 송혜림(2008). 통합적 가정정책: 선언과 실천
- 송혜림 · 서지원(2008). 취업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의 “일-가정 균형” 제도 현황.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91-207.
- 윤소영(2008). 직장영역의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성과, 그리고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41-152.
- 윤소영 · 고선강(2009).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실시, 활용 및 요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1-21.
- 이완정(2009). 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 요구.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17-126.
- 이진숙(2010). 가족정책론. 학지사.
- 정영금a(2007).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일-가족 균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37-51.
- 정영금b(2008).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14.
- 정영금c(2009).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법과 정책의 비교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85-105.
- 조희금 외(2010). 건강한 가정, 우리 사회의 미래: 가족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제7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 통계청(2007). 경제활동인구연보
-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 최성일 · 유계숙(2006). 일-가족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발달단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51-73.
- 홍승아 외a(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 보고서.
- 홍승아 외b(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일-가정양립정책을 바라보는 생활과학적 관점에 대한 一考

김 성 희(순천대학교)

이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자 개인의 다양한 시각에서 제안되어온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생활과학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정리하여 나무를 묶어 숲을 보게 하는 작업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더 넓게는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학계들 특히 여성학과 사회복지학에서의 관점을 정리하여 생활과학이 양립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가시화시켜주고 있다. 여성학계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아동을 장애요인으로 간주해온 데 대해 사회복지계에서는 장애요인인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였고 생활과학에서는 여성주의 관점과 혼재된 가족인지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생활과학이 일 가정 양립 문제 해결에 적절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생활과학은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 가정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가정의 양립 문제에 대해 때로는 여성의 문제로 때로는 아동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로 가족원 개인의 입장에서 또는 가족 전체의 입장에서 연구자마다의 시각에 따라 연구해 온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장처럼 일 가정 양립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정의할 때 생활과학이야말로 어느 분야보다 여성 아동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생산에 다가갈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집약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연구자는 이처럼 생활과학이 지향하는 목적에 회귀하는 방향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 눈을 뜨게 하면서 일 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시각이라는 자신감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여타의 학문에서는 여성의 노동권, 아동의 인권, 부모권을 양자택일의 문제, 대립의 문제, 성의 문제로 제한해서 보고 있지만 생활과학은 가족의 행복권 확보라는 고유한 시각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맞추어 대안으로서 노동시간 감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남성의 가족화 전략과 아동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노동력 확보,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일 가정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가정에서 여성의 불리한 상황은 여전하며, 아동을 부모로부터 점점 더 격리시키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의 건강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때에 가족의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삼는 생활과학에서 지향해야할 정책을 제안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자가 제안하고 있는 1일 노동시간 감소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지지하며 생활과학에서 요구를 집약하여 정책적으로 실현시킬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경우 가족시간이 증가하고 아동이 가족과 함께하는 애착 시간이 최대한 보장되므로 이미 선진 복지국가에서 이를 정책화시켜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필요성만이 주장되고 있을 뿐 사회적 조정이 어려워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생활과학계가 중심이 되어 정책화에 따른 문제인 가계소득의 감소 등을 노동계 등의 관련 기구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가족의 건강성 회복과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 창출을 두 마리 토끼로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면 그 추진력이 가히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시간 감소로 예측되는 가계소득의 감소 문제도 결국 가정생산 대체라는 시각에서 해결해갈 수 있다고 보므로 1일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논의는 생활과학계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과학계가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간다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최적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